

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」

## 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###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5. 11. 17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### 개정(제안) 이유

- 점용료, 변상금 분할 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을 적용하며
-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단계별 부담액을 조례에 이관 규정하고
-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5.3.1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정한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 요 골 자

○ 안제2조 제3호에

“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의 비·햇빛 가리개, 기타 이와 유사한 것” 신설(추가)

○ 안제5조 제2항중

“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”을 “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”로 개정

○ 안제7조 제1항제5호에

“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의 비·햇빛 가리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” 신설(추가)

○ 안제7조 제2항제4호에

“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정용료의 2분의 1을 감면” 신설(추가)

○ 안제9조 제3항중

“연8퍼센트의 이자”을 “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”로 개정

○ 안제10조(과태료 부과·징수)신설

“구청장은 법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「별표2」와 같다. 신설(추가)

○ 안제11조(준용규정)신설

“정용료·변상금·가산금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” 신설(추가)

- “제10조내지 제11조” 을  
각각 “안제12조내지 안제13조” 로 함
- 안제14조(시행규칙)신설  
“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” 신설(추가)
- 『별표1』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 
“제10호” 을 “제11호” 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

점용물의 종류	기 준 단 위		점용료
	점용단위	기준단위	
10. 구청장이 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필요 하다고 지정·공고·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 시설 · 비가리개 시설 · 기타 이와 유사한 것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01를 곱한 금액

**관 련 법 규**

-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· 같은법시행령제7조
- 도로법제40조·제43조 · 제86조의2 · 같은법시행령제26조의2
-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-2
-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

**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**

- 서울특별시

## □ 검토 의견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정용료·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을 적용하며
-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단계별 부담액을 조례에 이관 규정하고
-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.3.1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정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

### ○ 안제2조제3호에

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을 추가하고자 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의 비·햇빛가리개, 기타 이와 유사한 것」을 신설(추가)

### ○ 안제5조제2항중

「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」을 「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」로 개정

### ○ 안제7조제1항제5호에

정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재래시장의 시설환경개선을 촉진하고자 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의 비·햇빛가리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」을 신설(추가)하고 동조제2항제4호에 감면율은 「정용료의 2분의1을 감면」하도록 하였으며,

### ○ 안제9조제3항중

「연8퍼센트의 이자」을 「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」로 개정

- 안제10조와 제11조 및 제14조를 신설(추가)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
  - ° 「제10조(과태료부과·징수)구청장은 법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"별표2"와 같다」로
  - ° 「제11조(준용규정)점용료·변상금, 가산금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」로
  - ° 「제14조(시행규칙)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」로 각각 신설(추가)하였고,

- 「제10조내지 제11조」을 각각 「안제12조내지 제13조」로 하였습니다.

○ 또한 “별표1” 점용료 산정기준표중

「제10호」을 「제11호」로 하고 제10호에 「구청장이 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·공고·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·비가리개 시설·기타 이와 유사한 것」에 대한 「점용료 산정기준」은 “점용면적 1㎡당 1년 단위로 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 금액”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14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으로 조례안의 관련규정도 특별법(점용료 감면 유효기간의 근거법)과 동일하게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본 개정안 부칙에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는바,

“부칙” 「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」

「제2조(유효기간)제2조제3호와 제7조제1항 제5호 및 동조제2항 제4호는 2014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」를 신설(추가)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입니다.

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 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겠습니다.

2005. 12. 5

보고자: 이 남 식